

인도네시아(Indonesia)

1 근거법 제정 시기

- 최초법 : 1977년(정부 규정), 1992년(근로자 사회보장)
- 현행법 : 2004년(사회보장제도), 단계별 시행 중; 2011년(사회보장기관), 2014년 시행; 2015년(연금제도 규정); 2015년(적립기금 규정); 2015년(생명보험 규정)

2 제도형태

- 사회보험, 적립기금, 의무생명보험제도

3 적용대상

- 사회보험
 - 당연적용 : 공공 및 민간 부문 근로자.
 - 적용제외 : 자영자
- 적립기금
 - 당연적용 : 근로자(6개월 이상 인도네시아에서 근로한 외국인 근로자 포함)
 - 임의적용 : 자영자
 - 특별제도 : 공공부문 근로자, 군인 및 경찰
- 의무생명보험 : 최소 6개월 이상 인도네시아에서 근로한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공식 및 비공식 부문 근로자

4 재원조달

- 가입자
 - 사회보험 : 총 월 가입소득의 1%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최고 소득은 8,094,000 rupiah임
 - 적립기금 : 총 월 소득의 2%
 - 의무생명보험 : 없음
- 자영자
 - 사회보험 : 해당 없음
 - 적립기금 : 총 월 신고소득의 최소 2%
 - 의무생명보험 : 6,800 rupiah의 월정액 보험료 납부

○ 사용자

- 사회보험 : 총 월 가입소득의 2%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최고 소득은 8,904,000 rupiah임
- 적립기금 : 월 임금지급총액의 3.7%
- 의무생명보험 : 월 임금지급총액의 0.3%

○ 정 부

- 사회보험 : 없음; 사용자로서 납부함
- 적립기금 : 없음
- 의무생명보험 : 없음; 사용자로서 납부함

5 급여종류별 수급요건

○ 노령급여

- 노령연금(사회보험) : 최소 180개월 이상의 가입기간을 가진 56세에 도달한 자(3년마다 1년씩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43년에 65세 도달함)
- 노령청산금(사회보험) : 180개월 미만의 가입기간을 가진 56세에 도달한 자(3년마다 1년씩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43년에 65세 도달함)
- 노령급여(적립기금)
 - 56세에 도달한 자(매년 1년씩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2043년에 65세 도달함)
 - 영구 이주, 공무원으로 임용, 군복무 시작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기금 가입 후 최소 6개월 이상 실직 상태인 경우 연령 관계없이 인출 가능
 - 퇴직 불필요
 - 연기연금 : 급여가 연기될 수 있음. 연기 제한 연령 없음

○ 장애급여

- 장애연금(사회보험)
 - 일반퇴직연령 미만으로 완전한 또는 영구적인 장애로 판단되어야 하며 장애 발생 전 1개월 이상 가입했고 보험료 납부 준수율이 80% 이상이어야 함
 - 보험료 납부 준수율은 <가입자의 보험료 납부연수 ÷ 가입연수>임
- 장애청산금(사회보험)
 - 일반퇴직연령 미만으로 완전한 또는 영구적인 장애로 판단되어야 하며, 1개월 미만의 가입 기간 또는 보험료 납부 준수율이 80% 미만이어야 함
 - 보험료 납부 준수율은 <가입자의 보험료 납부연수 ÷ 가입연수>임
- 장애급여(적립금고)
 - 일반퇴직연령 미만이고 산업재해로 인해 완전히 영구적으로 근로가 불능함으로 판단 되어야 함. 근로능력 상실여부는 의사가 판정해야 함

○ 유족연금

- 유족연금(사회보험)
 - 사망자가 사회보험 노령 또는 장애연금을 수급 중이었거나 수급 자격이 있었고, 최소 1년 이상의 가입기간이 있었으며, 보험료 납부 준수율이 최소 80%이상인 경우 지급
 - 보험료 납부 준수율은 <사망자의 보험료 납부연수 ÷ 가입연수>임
 - 수급자격이 있는 유족은 미망인(홀아비), 자녀, 부모를 포함함
 - 미망인(홀아비)의 연금은 재혼 시 중지됨
- 유족청산금(사회보험)
 - 사망자가 1년 미만의 가입기간을 가지거나 보험료 납부 준수율이 80% 미만인 경우 지급
 - 보험료 납부 준수율은 <사망자의 보험료 납부연수 ÷ 가입연수>임
 - 수급자격이 있는 유족은 미망인(홀아비), 자녀, 부모를 포함함
- 유족급여(적립기금)
 - 56세 미만의 기금 가입자(3년마다 1년씩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2043년에는 65세) 또는 주기적인 적립기금 노령/장애급여 수급자 사망 시 수급자격이 있는 유족들에게 지급됨
 - 수급자격이 있는 유족은 배우자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 피부양 자녀가 됨
- 사망수당 및 장제비(의무생명보험)
 - 가입자 사망 시 수급자격이 있는 유족들에게 지급됨
 - 수급자격이 있는 유족은(우선순서대로) 배우자, 자녀, 부모, 손자, 조부모, 형제자매,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함. 수급자격 유족의 부재 시, 급여는 사망자에 의해 지정된 자에게 지급됨; 지정된 유족이 없다면 장례비를 지불한 자에게 장례 급여만 지급됨

6 급여종류별 지급액

○ 노령연금

- 노령연금(사회보험)
 - <가입자 평균 조정 연소득의 1% ÷ 12 × 보험금 납부연수>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됨
 - 월 최저노령연금은 331,000 rupiah임
 - 월 최고노령연금은 3,971,400 rupiah임
 - 급여조정 : 급여는 2년마다 조정됨
- 노령청산금(사회보험) : <가입자 사회보험 보험료 납입총액 + 경과이자>에 해당하는 일시금이 지급됨
- 노령급여(적립기금)
 - <근로자 및 사용자 적립기금 보험료 납입총액 + 경과이자>에 해당하는 일시금이 지급됨
 - 적립금고 계좌에 50만 rupiah 이상을 보유한 가입자들은 정기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
 - 연기급여 : 노령급여와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됨

○ 장애연금

- 장애연금(사회보험)
 - <가입자 평균 조정 연소득의 1% ÷ 12 × 보험금 납부연수>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됨
 - 월 최저 장애연금액은 331.000 rupiah임

- 월 최대 장애연금액은 3,971,400 rupiah임
- 급여조정 : 급여는 2년마다 조정됨
- 장애청산금(사회보험) : <가입자 사회보험 보험료 납입총액 + 경과이자>에 해당하는 일시금이 지급됨
- 장애급여(적립기금)
 - <근로자 및 사용자 적립기금 보험료 납입총액 + 경과이자>에 해당하는 일시금이 지급됨.
 - 적립금고 계좌에 50만 rupiah 이상을 보유한 가입자들은 정기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

○ 유족연금

- 유족연금(사회보험)
 - 배우자연금 : 사망자가 수급 중이거나 수급자격이 있었던 사회보험 노령 또는 장애연금의 50%가 미망인(홀아비)에게 지급됨
 - 고아연금 : 사망자가 수급 중이거나 수급자격이 있었던 사회보험 노령 또는 장애연금의 50%가 완전한 고아에게; 불완전 고아에게 배우자연금의 50%가 지급됨
 - 부모연금 : 수급자격이 있는 배우자나 자녀가 없다면, 사망자가 수급 중이거나 수급자격이 있었던 사회보험 노령 또는 장애연금의 20%가 부모에게 지급됨
 - 급여조정 : 급여는 2년마다 조정됨
- 유족청산금(사회보험) : <사망자의 사회보험 보험료 납입총액 + 경과이자>에 해당하는 일시금이 지급됨
- 유족급여(적립기금)
 - <근로자 및 사용자 적립기금 보험료 납입총액 + 경과이자 - 사망자에게 이미 지급된 연금액>에 해당하는 일시금이 지급됨. 사망자의 적립금고 계좌에 50만 rupiah 이상을 보유되어 있다면, 유족은 정기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
- 사망급여(의무생명보험)
 - 사망수당 : 16,200,000 rupiah에 해당하는 일시금에 최대 24개월까지 월 200,000 rupiah가 추가 지급됨
 - 장제비 : 3,000,000 rupiah에 해당하는 일시금이 지급됨

7 관리운영기관

- 국가사회보장국(National Security Board)
 - 전반적 감독
 - <http://djsn.go.id>
- 고용사회보장공단(BPJS)
 - 보험료 징수, 급여 관리, 투자 기금 관리
 - <https://www.bpjsketenagakerjaan.go.id>

<2018년 ISSA 자료>